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2022년 2분기 미화 직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정기교육]

2022. 6. 25.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1교시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태동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2020년 1월 16일 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제1조 목적	○ 기준확립, 책임소재 명확화 ○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제3조 적용범위	○ 원칙: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 일부적용: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의 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적용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작업 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사업자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급박한 위험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 방호장치 해체금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 -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 준수
제24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정기교육 - 생산직 근로자 분기 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일반사항)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안전문화/건강관리) ○ 채용 시 교육 - 생산직 근로자 8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일반사항) -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작업개시 전 점검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다만,유해·위험의 정도,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범위 등)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 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산업 진흥행정, 외교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을 포함(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함)

예) 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행정 사무서비스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등

예)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별표 1) >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별표 1) >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해당 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4.산업보건의 5.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①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4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다만,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구분	내용
정기교육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가 매년 일정 시간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작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 교육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방법

○ 현장교육
- 각급기관 근무장소에서 관리감독자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 포함)

○ 집체교육
- 자체 집체교육은 각급 기관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
- 위탁 집체교육은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 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원격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우편교육
-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 교재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평가 및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혼합교육
- 관리감독자가 교육 방법을 두가지(원격교육 8시간,집체교육 8시간)로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사례

○ 대체자가 2월에 16시간 교육을 수강한 경우 복귀자가 나머지 8시간만 수강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답변) >

❍ 질의
- ▸ 대체자가 2월에 실시한 급식종사 산업안전보건교육 16시간을 수강함
- ▸ 3월 1일에 복귀하는 자가 대체자 16시간 교육 나머지 시간인 8시간만 수강하여도 문제 없는지 여부

❍ 답변
- ▸ 연간 24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휴직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2시간의 수강 의무가 있음
- ▸ 대체자가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였다면 복귀자가 나머지 8시간만 수강하면 되었으나, 3월에 복귀하는 경우 20시간의 수강의무가 있음

○ 학교공사로 21년 4분기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 질의
- ▸ 21년 4분기 학교 공사로 조리종사원 및 기타 현업근로자가 출근 및 교육이수 못함
- ▸ 이수 기간은 지났지만 현 상황에서 4분기 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방학 등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됨
- ▸ 21년 4분기에 학교 공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교육 이수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에 공사로 현업업무종사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됨

2교시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

1 개요

□ **목표 : 안전의식 향상 및 동기부여**

1. 사고발생 원인	2.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3E대책)	3. 방법
불안전한 행동	**교육적 대책**	**① 안전 교육** **② 안전 훈련**
불량한 작업환경	제도적 대책	① 안전 수칙 ② 안전 규제
부족한 작업기술	기술적 대책	① 안전 기술 ② 안전 설비

2 대한민국의 현실

□ **자살률 1위: 2018년 기준 하루 37.5명 사망**

□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 2020년 2,080명 사망(사고사망자수:828명, 질병사망자수:1,252명)**

□ **결핵 발생 1위: 인구 10만명당 55명 발병**

□ **보행자 사망사고 1위: 인구 10만명당 3.3명 사망, OECD 평균 3배**

□ **아동 삶의 만족도 꼴찌**

OECD 가입 국가 36개 중 규모가 작은 5개 나라를 제외한 31개국 중 안전 지수 30위

3 사고사례

□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 사고사례) >

○ 사고날짜: 1971년 12월 25일
○ 사고원인: 1층 호텔 프로판 가스통 폭발
○ 피해규모: 사망 136명, 부상 63명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사고사례) >

○ 사고날짜: 1995년 6월 29일
○ 사고원인: 부실설계, 부실공사, 유지관리 부실
○ 피해규모: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 사고사례) >

○ 사고날짜: 1999년 6월 30일
○ 사고원인: 원인불명의 화재(모기향으로 추정)
○ 피해규모: 사망 23명, 부상 6명

□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 사고사례) >

○ 사고날짜: 1999년 10월 30일
○ 사고원인: 노래방 아르바이트생 2명 불장난
○ 피해원인: 사망 56명, 부상 78명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사고사례) >

○ 사고날짜: 2003년 2월 18일
○ 사고원인: 방화
○ 피해규모: 사망 192명, 실종 21명, 부상 148명

□ 서산 레미콘차량 전복 사고

< 사고사례) >

○ 사고날짜: 2015년 10월 14일
○ 사고원인: 정지신호 무시하고 급회전 중 전복
○ 피해규모: 사망 3명, 부상 4명

4 안전의식

□ 안전의식 부재

○ 이불 추락사

국제신문

부산 아파트서 이불 털다 추락해 30대 주부 숨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5.07.15 20:50

15일 오전 8시 54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22층에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이불 먼지를 털던 30대 여성 박 모(32)씨가 1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남편 등 가족과 함께 시댁을 찾아와 하룻밤을 보낸 뒤 이날 오전 창밖으로 이불을 털다가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박 씨가 금일 약속이 있었고 지병이 없어 자살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가족 및 주변 지인 등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수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출처: [2015.07.15 국제신문]

창밖으로 이불 털다...부산 아파트 23층서 추락사

2016-02-24 19:41 입력
2016-02-24 20:48 수정

★스크랩



【앵커멘트】
부산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불을 털다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출처: [2016.02.24 MBN 뉴스]

국민일보

부산 아파트 11층 베란다서 이불 털다... 50대 추락사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12.30. 오전 9:58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5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5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11층에 사는 A(55)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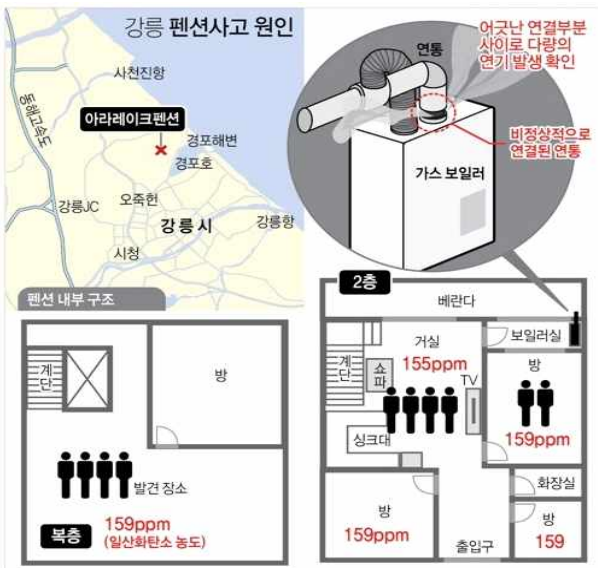
비명 소리를 들은 A씨 아내가 남편이 화단으로 추락한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처: [2017.12.30 국민일보]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서울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가스 보일러에 유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 사망



출처: [2018.04.03 채널A뉴스]



출처: [2018.04.03 채널A뉴스]

□ 잘못된 생각과 습관

○ 불법주차에 의한 화재 초기 진압 실패 사례와 문제점

☞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 막고 비상구엔 물건 쌓아 무용지물

< 사고 사례) >

❍사고날짜: 2013년 12월 11일

❍사고개요: 부산 화명동 아파트. 일가족 4명 참사

차량들, 소방차 진로 양보 안 하고 아파트 입구 불법주차로 진입 지연

❍사고날짜: 2015년 0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사망 4명, 부상 124명

❍사고개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사망 4명, 부상 124명

소방차량 진입할 공간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점용해 골든타임 놓침

❍사고날짜: 2015년 04월 23일

❍사고개요: 광주 월곡동 아파트. 주민 30명 이송

아파트 입구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 지연

❍사고날짜: 2016년 09월 24일

❍사고개요: 서울 쌍문동 아파트. 사망 3명, 부상 17명

골든타임에 진입하고도 불법 주정차로 진입에 어려움

❍사고날짜: 2016년 11월 30일

❍사고개요: 대구 서문시장 3지구. 679개 점포 손실

시장 골목이 좌판 등에 막혀 소방차 조기 진입 실패

❍사고날짜: 2017년 11월 11일

❍사고개요: 충북 충주시 봉방동 포장업체. 주민 70여명 대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차량에 막혀 소방차 진입 지연

5 사고분석

□ 지하계단 통행 중 넘어짐

< 재해 사례) >

○ 개요
▸지하 계단을 통해 공동구역으로 내려가던 미화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충분한 조도(75럭스 이상)가 확보되지 않은 지하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짐
○ 예방대책
▸지하계단 이동통로 조도 확보(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 지하계단 이동통로에는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조명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계단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비치하여야 함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계단 통행방법 개선
-계단을 이동할 경우 계단의 난간을 잡고 이동

□ 건물 미화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짐

< 재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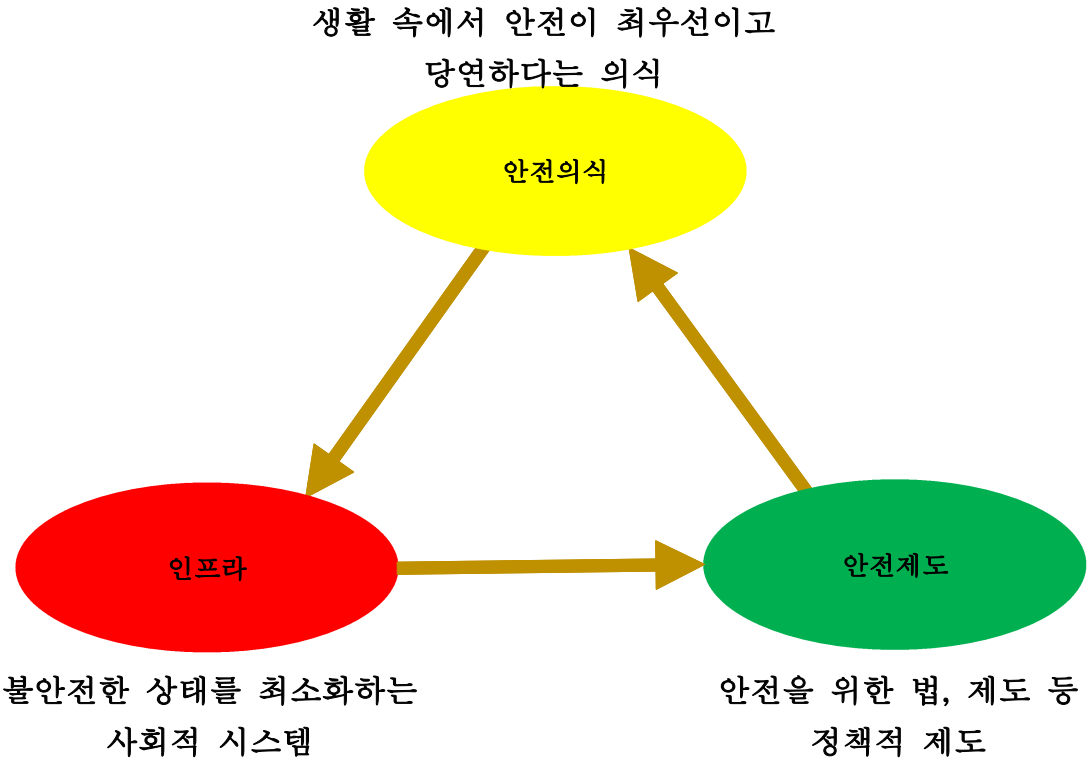
○ 개요
▸미화원이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중간 계단참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 중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계단 통행 방법 부적절
- 계단 통행 시 양손에 발판용 의자, 청소통 등을 들고 안전난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짐
○ 예방대책
▸계단 통행시 안전수칙 준수
-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실족 등에 의해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계단 측면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를 잡고 통행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
- 청소작업을 위한 계단 이동 시 슬리퍼, 낡은 운동화 등 착용 금지하고 가급적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화 착용

6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 위험관리의 문제점

○ 획일적, 형식적 대책

○ 안전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부재



□ 안전관리의 발전

○ 1단계: 개인전 접근(안전보호구/사업장 점검)

○ 2단계: 관리적 접근(안전교육/안전설비 강화)

○ 3단계: 시스템적 접근(위험 요소의 사전 제거/대응력 강화)

○ 4단계: 안전문화(위험의 공유/안전의 생활화)

□ 안전문화란?

안전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
(우리가 안전을 일구는 방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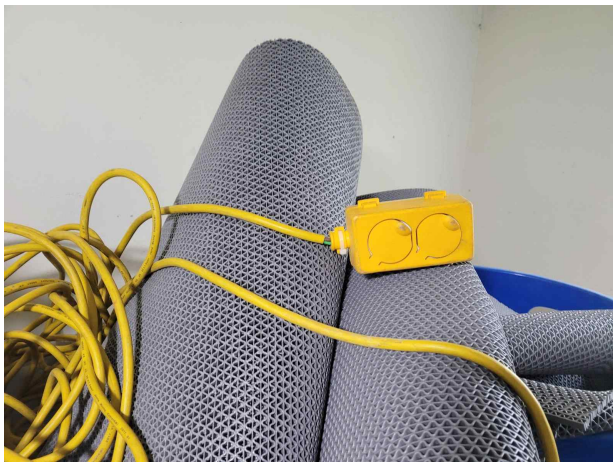
① 안전에 대한 관심 지속/확대

② 의사소통

③ 자연스러운 책임감 부여

7 경기도교육청 안전문화 변화

<table>
<tr><td colspan="2">귀덮개 착용</td><td colspan="2">안전장화 착용</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위험경고 표시</td><td colspan="2">안전보호구함 제작</td></tr>
<tr><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화학물질 관리(MSDS게시)</td><td colspan="2">화학물질 관리(위험경고표시 부착)</td></tr>
<tr><td></td><td></td><td></td><td>
</td></tr>
</table>

감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염화칼슘 위험경고표지 부착	**당직실 일산화탄소 누출경보기 설치**
	

3교시 청소노동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들

1 산재 보상 개요

□ 산재보험이란?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대신하여 재해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

□ 산재보상법의 특징은?

○ 강제사회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
○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무과실 책임: 실수를 하더라도 산재 인정
○ 정률 보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보상

□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

※ 산재보상법 제5조 1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 산재보상 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이송비 등을 보상
휴업급여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개시 후 2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지급
장해급여	•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간병급여	• 요양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유족급여	•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 산재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자에게(평균임금의 120일분)

□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

구분		내용
①	재해자 발생	• 응급처치
②	병원후송 및 보고	• 의료기관 • 관할지방 노동관서(재해조사표) 보고(사고 기준 30일 이내, 사망:즉시보고) ※ 벌: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③	산업재해 요양신청	• 요양신청서(피재자 작성) • 의사 소견서(날인)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④	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 청구서 • 병원확인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 평균임금 70% 지급(평균임금 산재처리)
⑤	장애급여 청구	• 청구서 • 병원확인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⑥	유족보상 청구 (사망시)	• 청구서 • 사망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⑦	장의비 청구 (사망시)	• 청구서 • 사망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2 법률 상식

□ 출퇴근재해 인정

< 출퇴근 재해) >

❍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음

▸단,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 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산재발생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4교시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1 미화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화학물질)

□ 청소작업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용도

○ 청소 시 사용되는 **각종 세정제, 세척제 등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근로자가 **유해성을 주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취급물질에 의한 **눈과 피부의 자극 또는 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

분류	용도
세정제	얼룩,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박리제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벗겨 내거나 제거하는 물질
광택제	표면에 윤기가 나도록 하는 물질
표백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 변색 또는 희게 하는 물질
살균소독제	표면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물질

□ 청소 작업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의 종류

분류	용도
일반세정제	그린퐁, 케미-2, 하이타이
변기세정제	티크린, 볼크린, 고스타프라임
찌든때 제거제	빅베어, 락스, 옵티멈 282
유리세정제	화인그라스, G-3
박리제	이지스트립, 스페셜스트립, 톱코프, 푸리스트립, 킹코트, 케미-1
광택제	HOS-3000, 캉가루 가구 광택제
표백제	옥시크린, 산소크린, 과탄산소다
살균제	롱다운, MD-125, 킬파프, 먼다킬
접착제	SCOTCH GRIP 2262

□ 화학물질 용도별 주된 건강영향

○ 일반세정제(세탁세제, 주방세제 등)

-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대부분 별다른 건강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계면활성제 등에 의한 자극성이 나타날 수 있음

○ 화장실 변기세정제

- 화장실 변기세정제는 주로 염삼과 같은 강산을 포함하며 산 증기는 눈 및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어 안구통증, 눈물, 기도 작열감, 기침, 질식감, 흉부 압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찌든 때 제거 세정제

- 주로 수산화나트륨과 **차아염소산 나트륨**같은 강한 염기성 물질을 포함

분류	증상
수산화나트륨	자극증상(피부, 눈, 점막), 중독
차아염소산 나트륨(유한락스)	민감 작용, 점막 자극증상

○ 유리세정제

- 눈과 점막을 자극하는 이소프로필알콜 포함

○ 바닥 청소시 사용하는 박리제

- 2-부톡시에탄올과 수산화나트륨 포함

분류	증상
톨루엔, 알코올, 2-부톡시에탄올	피부자극, 호흡기문제, 신경독성, 생식기 독성, 간기능 이상

□ 재해사례 및 안전작업방법

○ 세척제에 피부 및 각막 노출

< 재해 사례) >

❍ 개요

▸세척제가 눈과 얼굴에 튀어 피부 및 각막 화상 사고 발생

❍ 예방대책

▸세척제 용기는 뚜껑을 닫고 운반, 세척제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 페트병 화학물질 마신 사고

< 재해 사례) >

❍ 개요

▸페트병에 들어있는 화학제품을 음료로 착각하고 마시는 사고 발생

❍ 예방대책

▸화학물질은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 소분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2 안전한 락스 사용

□ 락스사용의 위험성

○ 락스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호흡기, 눈,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해진 방법이나 적절하게 희석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안전한 락스사용 5가지 약속

1. 희석배율 준수
   -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희석 배율 준수
2. 혼합 사용 금지
   - 다른 가정용 세제와 섞어 쓰기 금지(유해가스 발생 가능성)
3. 작업시 환기
   - 창문이나 출입구를 열고 작업(필요시 환기팬 활용)
4. 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보안경)를 꼭 착용
5. 분무 사용 금지
   - 절대 분무기에 넣고 사용하지 않기

< 희석 시 냉수 사용 >

락스를 뜨거운 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락스 성분이 분해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하고 소독효과가 떨어짐

□ 응급조치 요령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

< 응급조치>

○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조심해서 씻고 콘택트렌즈 착용시 제거
○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피부를 물로 씻어 낼 것
○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할 것
○ 먹었을 때: 입안을 씻어 내고 토하게 하지 말 것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읽어보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
-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

○ 근로자 스스로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고 직업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정보

구분	내용
①	• 제품 수령시 MSDS 수령
②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지 부착 확인
③	• 사업장에서 MSDS 비치 혹은 게시
④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⑤	•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및 게시/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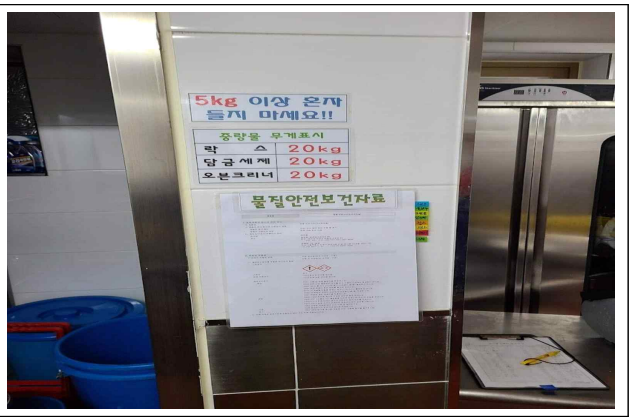
○ 안내 문구와 위험, 경고(유해성, 위험성) 표시를 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보관





5교시 근로자 건강진단

1 건강진단 개요 및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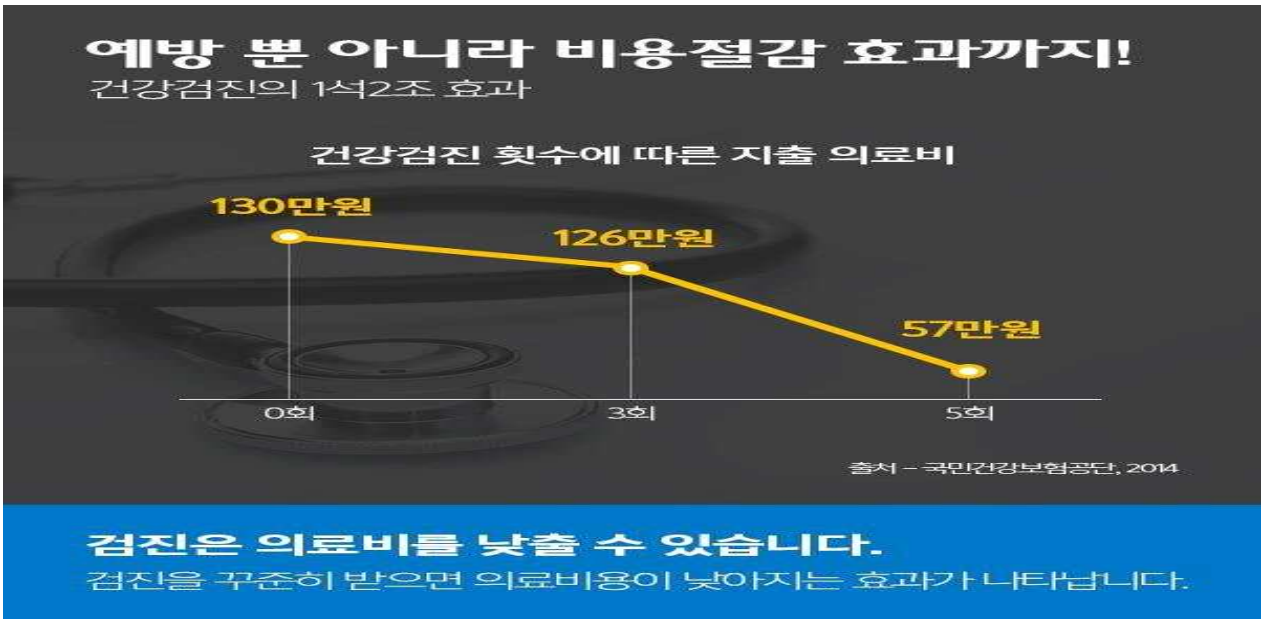
□ 건강진단의 목적

○ 건강 상태 확인

○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 지금의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함
-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함

○ 병의 조기 발견으로 비용 절감



□ 건강진단 구성요소

○ 선별검사

- 질병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 및 질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사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확진, 치료, 교육, 상담과 같은 추가적인 개입 조치

□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진단의 역사

○ 50~60년대(건강검진 필요성 계몽)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16인 이상 사업장에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의무 명시
- 1961년 근로자보건관리규정공표: 근로자 건강검진 본격 실시
- 감염질환,중독질환 중심

○ 70~90년대(집단중독 다수 발생, 건강검진 제도 정교화)

- 검진 전문성 확보
- 1972년 이후 유해요인 노출 유무에 따라 분리:일반 /특수
  (76년 5인 이상 /02년 5인 이하 포함)

○ 2000년대~현재

- 특수검진 항목 증가, 검진 항목 정교화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 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2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 일반건강진단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비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며,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특수, 배치전, 수시 건강진단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실시

□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 사업주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개인적으로 받은 종합건강검진 등)

□ 일반건강진단과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비교

일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항목
1. 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 증상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AST, ALT, 감마 GTP 및 총콜레스테롤	<	1. 문진,신체계측,혈압,시력 및 청력 2. 흉부방사선 촬영(직접촬영) 3. 요검사(요단백)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 AST,ALT,감마GTP - 혈청크레아티닌검사

※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일반건강 검진 안내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 검진 안내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www.nhis.or.kr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만19세~만64세 짝수연도 출생자

공통 검사항목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 /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증	혈색소		

□ 성 · 연령별 검사항목 및 확진검사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성 · 연령별 검사항목

※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으신 분은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통항목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HDL/L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만 24세 이상 여자:만 40세 이상(4년 주기)	남자:만24세, 28세, 32세... 여자:만 40세, 44세, 48세...만 해당
B형간염항원, 항체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 주기)	만 66세, 68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항목

확진검사

대상: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 실시기간: 2021년 1월 31일까지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 · 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
  (단,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발생)

□ 위암 검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www.nhis.or.kr



1단계 검진결과 암 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 여
위장 조영검사	4,638 ~ 5,199원	
위 내시경 검사	6,987원	
조직검사	4,370 ~ 6,57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 대장암 검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받습니다.



2단계 검진은
분변잠혈 검사 (대변검사) 결과
반응있음인 분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분변잠혈 검사(FOBT) → 반응있음 → 대장 내시경 검사 → 조직검사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 채취방법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채변통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 하셨다가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 부담 없음	만 50세이상 남, 여
분변잠혈검사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 간암 검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사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예방과 검진,
건강한 생활습관이 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기준

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9,200 ~ 9,798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 여성암 검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폐암 검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진단 장소

○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근처 병원 목록 확인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https://hi.nhis.or.kr)
○ 114 전화로 확인 가능
- 지역번호+114에 전화하면 가까운 검진기관 안내

□ 건강진단 시 유의사항

○ 10월 이후에는 38% 이상의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이 불편함
- 수검자가 덜 집중되는 시기에(1월~9월) 진행
○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건강진단기관이 사전에 배포하는 문진표 등을 충실히 작성
○ 건강진단 2~3일 전부터 음주나 과로를 피하고, 특히 건강진단 실시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부터 음식이나 커피 흡연 등을 피함
○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금식하되 약은 꼭 원래대로 복용
○ 당뇨약은 건강진단 전 금식 시점부터 복용/주사를 중단

3 건강진단 사후관리

□ 좋은 건강검진이란?

○ 검진 항목이 많은 것 보다 **검진결과의 의미**와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사후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가장 중요

○ 검진기관은 자동화된 판정시스템을 이용해 결과를 통보하므로 결과지는 획일화된 내용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음

○ 검진으로 찾아낸 건강문제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의료인 외에는 알 수 없음

○ 적절한 사후관리로 건강상태의 방치 또는 과잉대처를 막을 수 있음

□ 건강진단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건강진단 사후관리 방법

○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의 건강상담 및 후속 조치

- 건강진단기관: 수검받은 건강진단기관에 문의 후 방문
-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근로자건강센터